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서

의안 번호	83
----------	----

제출년월일 : 2019. 2.

제 출 자 : 평창군수

2019년 1월 25일 평창군의회로부터 이송된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평창군의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재 의 이 유

기획관-1633(2019.1.31.)호 관련,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표2 월정수당 지급기준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를 위반(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원활동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월정수당을 결정)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재결정하도록 재의 요구함.

붙임 1. 조례안 1부.

2. 참고문서(강원도 재의요구) 1부. 끝.

제 호

평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제3조제1항 관련)

연도	월 정 수 당
2019년	월2,320,000원
2020년	2019년 월정수당 + (2019년 월정수당 × 2019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2021년	2020년 월정수당 + (2020년 월정수당 × 2020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2022년	2021년 월정수당 + (2021년 월정수당 × 2021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강 원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평창군 공포 예정 자치법규(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1. 평창군 기획감사실-1278(2019.1.28.)호 및 도 교육법무과-1069(2019.1.29.)호와 관련됩니다.
2.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의 월정수당 지급기준 규정에 위배되어 재의를 요구합니다.

붙임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1부. 끝.

강 원 도 지 사

수신자 교육법무과장, 평창군수(기획감사실장)

주무관	의회협력담당	기획담당	대결 2019. 1. 31.	기획관	전명
협조자					
시행 기획관-1633	(2019. 1. 31.)	접수 기획감사실-1529	(2019. 1. 31.)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봉의동, 강원도청)		/ http://www.provin.gangwon.kr		
전화번호 033-249-2468	팩스번호 033-249-4393	/ hjb0719@korea.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개정안 검토의견

개 정 안	검 토 의 건		담 당 자
	수정안	사 유	
<p>○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수정(안 제3조)</p> <p>1) 2019년 : 월 2,320,000원</p> <p>2) 2020년 ~ 2022년</p> <p>· 전년도 월정수당+(전년도 월정수당×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p>	<p>※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341 (2019.1.30.)호, 권고 반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위반 -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원활동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월정수당은 결정 ▪ 관련 규정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재결정 	<p>기획관실 담당자 현종복 (249-2468)</p>